





도 : 서울특별시  
 방 법 : 자료제공, 목적, 회견(실경)  
 과 장 : 국 장

**기안용지**  
 (전화 : 731-6346)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30312- <b>FKD</b>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운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5년	  행정과장
시행일자	86.9.	
보조 기관	도시계획국상 전결 시설계획과상 시설계획1계장	법무담당관 협조통계관
기안책임자	이상천 (김용덕)	협조기관 행정과장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인 발
제목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변경결정및 지적승인	
(계 1안) 내부결재	9/22 도시계 693	
1. 연료 29232-449 (86.9.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산언경계구장으로 부여 구도구 고침동 66-12인대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이 당초 결정및 지적승인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하여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요청이 있어,		
3.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에 대하여 도면 변경없이 변경결정(면적정정)및 지적승인코자 합니다.		
첨부 : 관계서류 1건. 끝.		

(계 2안) 고시안

제 69 호	제 368 호
담	방무담당관
	전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우러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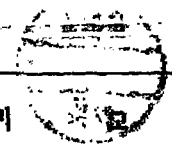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구토구정 도시정비과및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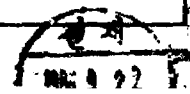
1986. 9.

서울특별시장

변경결정및 지적승인도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m <sup>2</sup> )	비
기정	가스공급설비	구로구 고척동 66-12일대	11,757	
변경	"	"	11,435	도면변경없이 면적정정
기정	운동장	구로구 고척동 66-2일대	96,995	
변경	"	"	99,119	증 322M <sup>2</sup>



○ 변경결정및 지적승인도면 : 벌침(벌침도면 생략)

(계 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 같음

1. 우천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을 벌침과 같이 변경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1부. 끝.

(계 4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변경결정및 지적승인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라. 게재내용 : 벌침

첨부 : 고시문 사본2부. 끝.

(계 5안)

수신 : 구로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음

1. 귀구 관내 고척동 66-2일대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통보하오니, 도시계획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계 6안)

수신 : 연료과장

제목 : 같음

1. 연료 29232-449(86.9.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및 지적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계 7안)

수신 : 수신처 참조 -563

제목 : 같음

1. 우미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운동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및 지적

승인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5. 9. 22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